

# 양도성예금증서 약관 공시사항

## 1. 기본사항

제정일	개정시행일	판매종료여부(종료일)	기존고객적용여부
-	2019.09.16	-	적용

## 2. 개정대비표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1	<p><b>제13조 관련법규의 준용</b></p> <p>등록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채등록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</p>	<p><b>제 13 조 관련법규의 준용</b></p> <p>등록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, 「은행법」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</p>	<p>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정 및 「공사채등록법」 폐지에 따라 기존 특약 중 「공사채등록법」을 인용하였던 부분을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</p>

## 3. 담당부서명 : 자금부

붙임1

## 약관변경보고서

1. 약관명: 양도성예금증서 특약
2. 제정(변경)의 필요성 :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정 및 「공사채등록법」 폐지에 따라 기존 특약 중 「공사채등록법」을 인용하였던 부분을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
3. 주요 제정(변경)내용 :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반영하여 해당 문구 약관에 삽입
4. 신규조문대비표(변경의 경우) : 별지 신규조문대비표 참조
5. 시행일자 : 2019. 9. 16
6. 사후보고 근거 :  
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0조 제1항 제5호 법령의 제·개정에 의한 약관의 변경에 해당함
7. 상품의 특징 : 중국공상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발행에 본 약관을 적용
8. 약관본문 (전체) : 약관심사시스템에 업로드

**[별지] 신구조문대비표**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1	<p><b>제13조 관련법규의 준용</b>                      등록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채등록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</p>	<p><b>제13조 관련법규의 준용</b>                      등록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, 「은행법」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</p>

## 양도성예금증서 특약

### 제1조 적용범위

양도성 예금증서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.

### 제2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의 과목은 양도성 예금 증서로 합니다.

### 제3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외국환거래법상 국민인 거주자 (개인, 개인사업자, 국내법인, 임의단체 등)로 합니다.

### 제4조 계약기간

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30일 이상 3년 이내에서 월단위 또는 일단위로 합니다.

### 제5조 만기일전 지급거절 및 일부 해지 불가

이 예금은 만기일 전에 지급하지 않습니다. 또한 일부 해지가 불가합니다.

### 제6조 최저가입금액

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미화 10,000불 상당액 이상으로 합니다.

### 제7조 가입가능통화

이 예금의 가입가능통화는 (USD, KRW, CNY, YEN, EUR, GBP) 으로 합니다.

### 제8조 발행형식

이 예금의 발행형식은 증권예탁원을 통한 등록발행으로 합니다.

### 제9조 이자

가입 당시 영업점 (자금부)에서 체결된 약정 이율이 적용됩니다. 만기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

### 제10조 가입기간 연장 불가

이 예금은 가입기간 연장이 불가합니다.

### **제11조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제외**

이 예금은 ‘예금자 보호법’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상품입니다.

### **제12조 양도 및 담보제공**

이 예금은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. 단, 양수도는 외국환 거래법상 거주자간 혹은 비거주자간에만 가능하고,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양수도는 불가합니다.

### **제13조 관련법규의 준용**

등록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, 「은행법」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### **<부칙>**

이 약관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적용합니다.